

리콜제도와 기업의 대응실무



국내외 리콜제도

* 미 국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전부터 판례로 정착된 제조물책임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 중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각종 소비자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어려움 없이 도입되었다.

1906년에 제정된 연방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 Act)은 1930년대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수정하고, 공공보건법, 방사선 통제법 등과 통합되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잠재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와 함께 리콜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사고의 상당부분이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져

“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각종 소비자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어려움 없이 도입되었다.

”

1966년 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리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는 1967년 연방의회에서 연방 소비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해한 소비제품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소비 제품으로 인하여 연간 약 2백만명 이상이 부상 또는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밝혀져 1972년 소비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일반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재 품목별 리콜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6개 연방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 웹사이트(<http://www.recall.gov>)를 운영하고 있다.

◎ 리콜관련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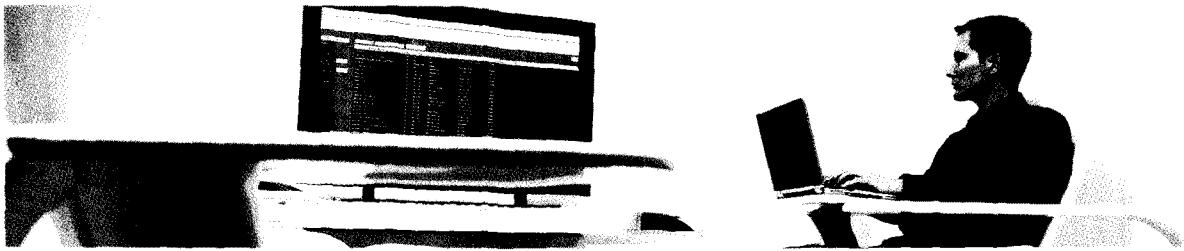
각 제품별로 개별법에 리콜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미국의 제품별 리콜관련 법률 현황 〉

구 분	담당기관	관련법률	관장 제품군
소비자제품 (Consumer products)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15 U.S.C. 2084)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소비자제품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16 CFR 1115	- 일반기기(appliances) - 가구(furniture) - 조명기구/라이터 (lighting/lighter) - 의류(clothing) - 가사용품(household) - 야외용품(outdoor) - 전기전자제품 (electronic/electric) - 어린이용품 (children's products) - 스포츠용품 (sports/exercise)

제품안전 리콜제도

구 분	담당기관	관련법률	관장 제품군
자동차 (Motor vehicles)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 49 U.S.C. 301. - TREAD Act Transpo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 자동차 및 자동차장치 (motor vehicles & related equipment) - 어린이안전시트 (child safety seats) - 타이어 (tires)
보트 (Boats)	국가해상보안원 (USCG) (U.S. Coast Guard)	- 46 U.S.C. 4310 - 33 CFR 179	- 오락용 보트(개인용 배 포함) (recreational boats including personal watercraft)
식품 (Food)	식품의약품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연방식품약품 및 화장품법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21 CFR	- 각종 식품
의약품 (Medicine)	식품의약품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연방식품약품 및 화장품법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21 CFR	- 약품(drugs)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혈액 및 플라즈마 제품 (blood and plasma products) - 백신(vaccine) - 기타 생물제제 (other biologics) - 가축용 제품 (veterinary products)
화장품 (Cosmetics)	식품의약품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연방식품약품 및 화장품법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21 CFR	- 화장품(cosmetics)
환경관련 제품 (Environmental products)	환경보호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연방실충제, 살균제 및 쥐약법 (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 40CFR 152	- 실충제(pesticides) - 쥐약(rodenticides) - 살균제(fungicides) - 자동차배기ガ스 시험



◎ 리콜관련 주요 제도

① 리콜권고

● CPSC는 전국에 있는 병원과 전산망으로 연결된 위해정보수집시스템, 전용 핫라인, 각종 시험검사기관, 소비자단체, 기타 소송사례 및 기업 등을 통하여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전문기관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 자문 등을 통하여 제품의 결함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등급을 부여한다. 위해등급은 (1) A급 위해: 사망위험, 중대한 상해 및 질병위험,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위험, (2) B급 위해 : 사망위험이나 심각한 상해 및 질병위험은 없으나 상해나 질병위험이 있는 것, (3) C급 위해 : 상해 또는 질병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평가결과 결함제품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면 CPSC는 일단 해당기업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② 리콜명령

● 해당 기업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추가조사를 통한 리콜명령과 결

함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때 기업들은 정부의 명령을 수용하거나, 리콜명령 전 청문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리콜명령에 따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스스로 리콜하거나 정부의 권고에 응하고 있다.

③ 신속리콜프로그램

(Fast Track Recall Program)

● 자발적으로 리콜을 수행하려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품결함에 대한 CPSC의 예비판정단계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속리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공산품 리콜 전담기관인 CPSC와 리콜수행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실제로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해당 기업이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CPSC에 표시하고, 결함제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계획을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리콜이행이 시작될 경우 CPSC에서는 예비판정절차를 중단하게 된다.

▶ 다음호에 계속